

대전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나115663(본소), 2021나115670(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위자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나115663(본소), 2021나115670(반소)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0가소24565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B

변론 종결 2022. 5. 27.

판결 선고 2022. 7. 8.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0가소24565(본소), 2021가소4728(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본소청구취지 판결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반소에 대한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8. 피고에게 대전 동구 C 2층을 임대차보증금 4,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28.부터 2013. 4.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12. 11.경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대신 임대차보증금을 4,200만 원만 반환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6. 대전가양동우체국에서 연금보험을 해지하여 48,308,470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명목으로 수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1. 6.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4,200만 원만 반환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우체국 발행의 수표 합계 4,800만 원과 D은행 발행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800만 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초과 지급받은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 피고가 약 20만 원 상당 수도세, 정화조 값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3. 3. 2. 임대차기간동안의 가스요금 545,440원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금원을 청구취지로 추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권주의 원칙에 따라 이 부분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200만 원만을 받았을 뿐이고, 이를 초과하는 돈을 지급받은바 없다.

나. 판단

- 1)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4,200만 원을 초과하여 800만 원을 더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피고가 4,2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원을 지급받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2) 원고가 2012. 11. 6. 대전가양동우체국에서 발행받은 자기앞수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갑 제3호증).

1	E	2012. 11. 6.	2012. 11. 7.	1,000,000	F조합
2	G	2012. 11. 6.	2012. 11. 12.	1,000,000	H은행 황실점
3	I	2012. 11. 6.	2012. 11. 7.	1,000,000	F조합
4	J	2012. 11. 6.	2012. 11. 7.	1,000,000	H은행 비래동
5	K	2012. 11. 6.	2012. 11. 7.	40,000,000	H은행 비래동
6	L	2012. 11. 6.	2012. 11. 7.	1,000,000	H은행 비래동
7	M	2012. 11. 6.	2012. 11. 7.	1,000,000	F조합
8	N	2012. 11. 6.	2012. 11. 7.	1,000,000	F조합
9	O	2012. 11. 6.	2012. 11. 7.	1,000,000	F조합
합계		48,000,000			

피고는 위 수표 중 순번 4, 5, 6번 합계 4,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원고는 나머지 수표도 피고가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순번 1, 3, 7, 8, 9번 합계 5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의 연락처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은행입금표 등을 위조하여 F조합지점에서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해지하여 돈을 수령함으로써 이른바 '돈세탁'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11. 6. 원고명의로 F조합지점에서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정기예탁금 계좌가 개설되었고, 2012. 12. 20. 해지되어 해지지급금으로 5,001,687원이 지급된 사실, 위 계좌가 해지된 2012. 12. 20. F조합에서 받는 사람을 P(원고의 며느리)으로 하여 50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입금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12, 15,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은행입금표 등을 위조하여 돈세탁하는 방법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1. 6. 발행받은 수표 중 순번 1, 3, 7, 8, 9번 합계 500만 원을 같은 날 정기예탁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2. 12. 20. 해지하여 며느리 P에게 입금한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

나머지 순번 2번 수표를 피고가 지급받았다는 사실, 원고가 D은행 100만 원권 수표 2장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가압류이의 재판에서 피고에게 '도둑년', '돈세탁을 했다'는 등의 모욕적 표현을 하여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10. 28. 15:40경 대전지방법원 별관 334호 법정에서 열린 가압류 이의 재판(대전지방법원 2020카단 2304)에서 피고에게 '도둑년'

'돈세탁을 했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모욕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었을 정신적 손해배상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송의 경위와 경과,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모욕행위의 정도, 그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 대한 위자료를 5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4. 결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반소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40만 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제소 경위, 소송 경과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상준

판사신지은

판사이효선

1) 피고는 이 법원에 제출한 2022. 5. 9.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19호증 녹취록을 보면 원고가 F조합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를 도둑년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하였으나 이를 불법행위의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설령 추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도 원고는 피고가 없는 자리에서 F조합직원에게 말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모욕이라 보기 어렵다.